

이슈페이퍼 2012-0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요약	1
1. 서론	4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나. 연구내용	5
다. 연구방법	5
2. 관련법 및 제도	8
가. 중앙정부	8
나. 지방정부	11
3. 연구 결과	13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13
나. 위탁체에 대한 의견	14
다. 위탁기간 및 횟수	15
라. 위탁체 선정	18
4. 결론 및 정책제언	31
참고문헌	34
부록	35

표 차례

〈표 1〉 보육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5
〈표 2〉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6
〈표 3〉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6
〈표 4〉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내용	7
〈표 5〉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참여 시설 특성	7
〈표 6〉 원장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 조사	7
〈표 7〉 심층면담 일정	8
〈표 8〉 시·도별 보육 관련 조례 유형	12
〈표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 시군구 조사	13
〈표 10〉 위탁 형태: 어린이집 조사	14
〈표 11〉 바람직한 위탁체 형태: 시군구 조사	15
〈표 1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신규 위탁): 시군구 조사	16
〈표 13〉 현 위탁 계약기간: 어린이집 조사	16
〈표 14〉 위탁 횟수: 어린이집 조사	17
〈표 15〉 총 운영기간: 어린이집 조사	18
〈표 16〉 최초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19
〈표 17〉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20
〈표 18〉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21
〈표 19〉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22
〈표 20〉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시군구 조사	22
〈표 21〉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조건: 시군구 조사	23
〈표 22〉 위탁 심의위원 자격 요건: 어린이집 조사	23
〈표 23〉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시군구 조사	24
〈표 24〉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시군구 조사	25
〈표 25〉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어린이집 조사	25
〈표 26〉 신규·변경 위탁 추가 자료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26
〈표 27〉 재위탁 시 추가자료 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26
〈표 28〉 위탁 심사절차: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27

〈표 29〉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 실시 여부 및 시기: 어린이집 조사	27
〈표 30〉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 여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28
〈표 31〉 신규위탁 시 위탁금 제시 여부: 시군구 조사	28
〈표 32〉 위탁운영체 기여금: 어린이집 조사	29
〈표 33〉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2순위)	29
〈표 34〉 위탁계약 시 보증보험료: 어린이집 조사	30
〈표 35〉 재위탁 탈락 및 유지: 시군구 조사	30

그림 차례

[그림 1]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20
--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35
〈부록 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37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수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선행연구 및 조례 검토, 통계자료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통계자료 수집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 보육담당 공무원 174명, 보육정보센터장 4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집단 심층면담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 수렴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 본 원고는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것임.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종교법인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 36.2%는 사회복지법인, 23.0%는 개인위탁, 20.1%는 시군구 직영이 바람직한 위탁형태라고 생각함.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선호함.
- 위탁기간은 신규위탁 3년 70.5%, 5년 23.1%임. 재위탁 기간은 3년 68.8%, 5년 21.4%로 신규위탁과 비슷한 수준임.
- 위탁 횟수는 평균 3회, 위탁체나 위탁자의 총 운영기간은 평균 8.3년임.
-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80.9%로 가장 많음. 지역규모나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가장 많음.
 - 시군구 조사에서 단독 평가 후 재위탁 62.6%, 완전 공개경쟁 20.7%,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나 자동 재위탁, 기타 방법은 10.0% 미만임.
-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에 대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임.
- 위탁체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보육,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20.0%로 가장 많고, 부모 대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19.3%, 16.7%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 54.0%,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 수요자의 요구 반영 10.9%,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1.1%를 지적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47.1%, 공정성 39.8%, 정치적 중립성 8.6% 순서임.
- 재위탁 시 위탁체선정기준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시군구 담당자는 필요하다 57.5%, 필요하지 않다 20.7%,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하다 57.4%, 필요하지 않다 25.8%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임.
-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의 64% 정도가 공개되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가 공개됨. 비공개는 14.3%임.

3. 정책 제언

-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 운영권 부여
- 위탁체 선정심사심의위원 구성 비율 조정 및 자격조건 마련
- 재위탁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제도화
- 재위탁 심사절차에서 현장관찰 의무화
- 위탁체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의무화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젊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확대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00년 1,295개소에서 2005년 1,473개소, 2011년 2,116개소로 어린이집 전체 증가율에는 다소 못 미치나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이용 아동 수도 2000년 99,666명에서 2005년 111,911명, 2011년 143,035명으로 증가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10.6%를 차지함.
-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이란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공급의 기능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유희정 외, 2009),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3%를 제외한 70% 가까이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되고 있음.
 - 한때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직영에 필요한 예산과 담당 공무원의 관리능력 부족, 행정의 비탄력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위탁체 선정기준, 위탁 절차, 위탁의 공고, 위탁기간 및 평가 등 위탁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위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수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 보육조례와 제도 분석
 -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 파악
 -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향후 과제와 정책 대안 제시

다.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문헌 수집 검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2) 조사연구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음.

가) 보육전문가 조사

-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63개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보육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대상	구분	내용
시군구, 보육정보 센터장	위탁현황	- 위탁 현황, 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 및 인원수, 선정심사위원 자격, 시군구 적용 위탁심사기준표 신규, 재위탁 심사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재위탁 탈락 및 유지율, 재위탁 선정기준표 의무 사용에 대한 의견
	위탁심사기준의 적절성	

- 시군구 조사 응답자와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표 3>과 같음.

<표 2>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64.9(113)	고졸	2.9(5)
남자	35.1(61)	대학졸(3년제 이하)	16.1(28)
연령		4년제 대졸	73.6(128)
35세 미만	23.0(40)	대학원 졸	7.5(13)
35~40세 미만	13.2(23)	직급	
40~45세 미만	27.0(47)	9급	2.3(4)
45~50세 미만	23.6(41)	8급	21.8(38)
50세 이상	13.2(23)	7급	50.0(87)
		6급	25.9(45)
전체	100.0(174)	전체	100.0(174)

<표 3>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91.1(41)	4년제 대졸	6.7(3)
남자	8.9(4)	대학원 졸	93.3(42)
연령		보육 경력	
40세 미만	26.7(12)	10년 미만	24.4(11)
40~45세 미만	22.2(10)	10~15년 미만	24.4(11)
45~50세 미만	28.9(13)	15~20년 미만	40.0(18)
50세 이상	22.1(10)	20년 이상	13.2(5)
전체	100.0(45)	전체	100.0(45)

나)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본 추출된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어린이집에 대해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조사표를 발송한 후 1주일 후에 수거함.
 - 조사내용은 <표 4>와 같음.

〈표 4〉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내용

구분	내용
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	- 위탁 방법 및 횟수, 계약기간, 심사 절차 및 기준, 현장관찰 여부, 위탁심사 시 추가 요청 자료, 위탁관련 사항 공개여부, 선정심의위원 자격조건, 위탁심사의 보완점, 위탁운영체 기여, 보증보험 가입비용
어린이집 일반사항	- 개원일, 지역특성, 운영형태, 정원, 현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159개소
중 24%에 해당하는 총 517개소임(표 5 참조).
- 대도시가 247개소 47.8%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 154개소 29.8%, 읍면 116개
소 22.4%임.
 - 정원별로는 50~79인 이하가 34.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20% 이하임.
 -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원장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음.

〈표 5〉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참여 시설 특성

단위: %(개소)

구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이상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도시	28	(32.9)	37	(52.1)	78	(46.7)	56	(50.0)	48	(58.5)	247	(47.8)
중소도시	30	(35.3)	19	(26.8)	43	(25.7)	36	(32.1)	26	(31.7)	154	(29.8)
읍면	27	(31.8)	15	(21.1)	46	(27.5)	20	(17.9)	8	(9.8)	116	(22.4)
계	85	(100.0)	71	(100.0)	167	(100.0)	112	(100.0)	82	(100.0)	517	(100.0)

〈표 6〉 원장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경력	
여자	95.9(496)	없음	1.4(7)
남자	4.1(21)	1~3년	11.0(57)
학력		4~5년	8.7(45)
고졸	1.4(7)	6~10년	32.3(167)
대졸(3년제 이하)	12.4(64)	11~15년	25.9(134)
4년제 대학 재학	0.4(2)	16~20년	10.3(53)
4년제 졸	30.9(160)	21년 이상	2.9(15)
대학원 이상	54.9(284)		
전체	100.0(517)	전체	100.0(517)

(표 6 계속)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연령		원장경력	
40세 미만	14.1(73)	3년 이하	18.8(7)
40세 이상 45세 미만	25.9(134)	3~5년	13.3(9)
45세 이상 50세 미만	26.5(137)	5~10년	25.1(130)
50세 이상 55세 미만	20.5(106)	10~15년	23.0(119)
55세 이상 60세 미만	8.7(45)	15~20년	14.1(73)
60세 이상	4.3(22)	21년 이상	5.6(29)
전체	100.0(517)	전체	100.0(517)

3) 집단 심층면담

- 보육담당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함.

〈표 7〉 심층면담 일정

구분	장소(일시)	면담자	내용
원장 및 보육 정보 센터장	서울(7.17)	원장 2명	위탁체, 위탁방법, 위탁체 선정기준 관련 의견, 위탁체 심의 시 애로사항
	인천(4.24)	원장 3명	
	충북(5.15)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강원(5.15)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전남(5.24)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전북(5.24)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공무원	서울(8.30/9.17)	공무원 2명	위탁체 선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자문회의 및 간담회

- 보육담당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 수렴함.

2. 관련법 및 제도

가. 중앙정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최초 위탁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며,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1)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2012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가) 선정시기

-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심사결정을 해야 함. 단,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해야 함.

나)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신규 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하며,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함.
 -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및 방법, 심의 결과는 위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해야 함.

다) 위탁기간

-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가능하며,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로 제한할 수 있음.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마) 운영 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 수요 조사 실시 후 그 적용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바) 선정심사위원회

- 위탁체 선정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해야 함.

사)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사용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단,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함.
- 또한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을 제척하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함.

- 심사는 집합심사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함.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함.

아) 운영 위탁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2)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른 위탁체 선정 시 세부 심사기준은 신규·변경위탁, 재위탁에 따라 다르며, 각 세부항목은 <부표 1>과 <부표 2>에 제시함.
 - 위탁체 신규·변경 심사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으로 구성됨.
 - 재위탁 심사기준은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5개 항목으로 신규·변경 심사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

나. 지방정부

1) 보육조례 유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9항은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6개 시·도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5개 시·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223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표 8〉 시·도별 보육 관련 조례 유형

단위: 시군구

구분	2007년 ¹⁾						2012년 ²⁾						
	보육 조례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조례	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보육 위원회 운영 조례	없음	계	보육 조례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조례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기 타	없음	계
전체	46	67	68	16	35	232	116	8	35	66	1	5	231
서울	13	4	5	1	2	25	23	-	1	2	-	-	26
부산	-	1	15	-	-	16	2	-	1	13	-	-	16
인천	4	3	1	-	2	10	10	-	-	-	-	-	10
대구	-	1	7	-	-	8	2	-	6	-	-	-	8
대전	1	-	4	-	-	5	1	-	1	3	-	-	5
울산	1	4	-	-	-	5	-	5	-	-	-	-	5
광주	-	-	4	-	1	5	2	-	3	-	-	-	5
경기	12	10	2	1	6	31	27	1	-	3	-	-	31
강원	3	12	1	1	1	18	16	-	-	2	-	-	18
충북	1	8	-	2	1	12	7	-	1	4	-	-	12
충남	2	5	2	1	6	16	9	1	4	1	-	1	16
전북	5	6	-	-	5	14	5	-	6	2	-	1	14
전남	1	4	5	9	1	22	4	-	3	13	-	2	22
경북	2	9	9	-	2	23	2	-	8	11	1	1	23
경남	1	-	13	1	1	20	6	1	-	12	-	-	19
제주	-	-	-	-	-	2	-	-	1	-	-	-	1

주: 전남 강진, 전남 화평, 경북 군위,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으로 보육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 각년도 시군구 보육조례.

-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조례와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각기 따로 두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위탁운영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육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음.
- 각 시·도별로 보육관련 조례의 명칭 및 수록 내용은 차이가 있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은 보육 조례를 두고 있는 반면, 부산, 전남, 경남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두는 산하 자치단체가 더 많음. 제주도는 행정구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육 조례를 공통 적용함.

3. 연구 결과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1) 위탁형태

- 조사에 참여한 174개 시군구가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764개소 중 개인 위탁이 42.2%로 가장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종교, 학교, 단체 법인이 위탁하고 있고 시군구 직영은 8.7%로 낮음.

〈표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 시군구 조사

구분	시군구 직영	사회복 지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법인	개인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8.7	18.7	4.5	14.9	7.2	42.2	3.9	100.0	(1,764)
대도시	3.0	28.5	6.3	22.2	11.1	23.4	5.4	100.0	(863)
중소도시	13.2	9.9	3.5	7.8	3.8	59.4	2.5	100.0	(719)
읍면	17.6	6.6	-	8.2	2.2	63.2	2.2	100.0	(182)
2007년 조사 ¹⁾	8.5	20.4		28.3		37.5	4.3	100.0	(1,652)

주: 서문희 외(2007)년 조사에서 지역별 위탁형태에서 특별시·광역시 5.6%, 중소도시 11.2%, 군지역 12.6%로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이 28.5%로 가장 많고, 종교법인과 개인위탁도 20% 대로 비슷한 수준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절반 이상으로 차이를 보임. 특히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이 17.6%로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많음.
 - 시군구 위탁형태를 전수 조사한 200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서문희 외, 2007),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개인위탁 비율이 다소 높아짐.
-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개인위탁 비율이 39.8%로 가장 많으며, 시군구 직영은 15% 정도임.
-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많음.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도시지역, 개인위탁은 읍면지역이 많음.

- 개인위탁은 39인 이하가 57.6%, 사회복지법인은 1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28%를 차지함. 시군구 직영은 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임.

〈표 10〉 위탁 형태: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단체	개인	기타	시군구 직영	계(수)	X ² (df)
전체	22.8	12.4	4.1	4.4	39.8	1.7	14.7	100.0(486)	
지역									
대도시	37.7	17.8	4.9	3.6	20.2	3.2	12.6	100.0(235)	
중소도시	11.0	8.4	4.5	7.1	57.1	-	11.7	100.0(149)	123.0(20)***
읍면	6.9	6.0	1.7	2.6	58.6	0.9	23.3	100.0(102)	
정원									
39인 이하	16.5	3.5	1.2	2.4	57.6	1.2	17.6	100.0(85)	
40~49인	18.3	9.9	2.8	7.0	43.7	2.8	15.5	100.0(71)	
50~79인	23.6	17.4	5.1	2.8	36.5	1.1	13.5	100.0(178)	-
81~99인	25.7	9.9	5.0	6.9	37.6	1.0	13.9	100.0(101)	
100인 이상	28.0	15.9	4.9	4.9	28.0	3.7	14.6	100.0(82)	
2009년 조사 ¹⁾		71.1		4.3	7.1	0.9	33.0	100.0(211)	

자료: 1) 유희정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p < .001$

나. 위탁체에 대한 의견

- 보육담당자의 위탁형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이 36.2%로 가장 많고, 개인위탁과 시군구 직영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위탁형태는 사회복지법인, 대도시도 사회복지법인만,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임.
 - 보육 대상 영유아가 적어 개인이나 법인들이 위탁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시군구 직영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법인은 5% 정도 낮아짐.

〈표 11〉 바람직한 위탁체 형태: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명)							
	시군구 직영	사회복 지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법인	개인	기타	계(수)
전체	20.1	36.2	11.5	5.2	2.3	23.0	1.7	100.0(171)
대도시	18.6	49.2	15.3	1.7	-	11.9	3.4	100.0(57)
중소도시	14.5	20.0	14.5	5.5	3.6	40.0	1.8	100.0(54)
읍면	26.7	38.3	5.0	8.3	3.3	18.3	-	100.0(60)
2007년 조사 ¹⁾	18.9	41.2	7.0		3.5	25.9	3.5	100.0(228)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위탁기간 및 횟수

1) 위탁기간

- 시군구 조사에서 보육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위탁기간과 실제 위탁기간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 3년이 70.5%로 가장 많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23.1% 정도임.
 - 지역규모별로 보면, 위탁기간 3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고 5년은 도시일수록 많음.
- 보육조례 상의 위탁기간과 달리 실제 위탁기간이 다른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실제 위탁기간은 3년이 70.5%로 보육조례 상의 3년 위탁과 동일한 수준이나 위탁기간 1년은 보육조례로 정한 시군구는 없으나 실제 위탁기간에서는 0.6%임.
 - 위탁기간 4년과 5년도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율이 동일한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보육조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기간은 5년인 시군구가 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육조례와 다르게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신규 위탁):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보육조례					실제 위탁기간					
	2년	3년	4년	5년	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수)
전체	5.8	70.5	0.6	23.1	100.0(173)	0.6	5.2	70.5	0.6	23.1	100.0(173)
대도시	1.7	69.5	-	28.8	100.0(59)	-	1.7	66.1	-	32.2	100.0(59)
중소도시	7.4	68.5	-	24.1	100.0(54)	-	5.6	74.1	-	20.4	100.0(54)
읍면	8.3	73.3	1.7	16.7	100.0(60)	1.7	8.3	71.7	1.7	16.7	100.0(60)

- 재위탁의 경우도 실제 위탁기간을 보면, 재위탁 기간 2년과 3년, 5년이 다소 줄었고 1년은 반대로 다소 늘었다. 특히 보육조례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위탁기간을 6년 이상 정하는 곳도 2.3%임.

- 어린이집 조사에서 현 위탁 계약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이 88.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5% 미만 수준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4.9% 정도로 소수임.

〈표 13〉 현 위탁 계약기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계(수)
전체	0.4	4.1	88.5	0.6	4.9	1.4	100.0(486)
대도시	-	3.8	88.1	0.9	5.5	1.7	100.0(235)
중소도시	0.7	4.0	89.9	-	4.7	0.7	100.0(149)
읍면	1.0	4.9	87.3	1.0	3.9	2.0	100.0(102)
2007년 조사 ¹⁾	0.7	8.2	88.7	0.5	1.2	0.7	100.0(586)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서문희 외, 2007), 위탁기간 3년은 비슷한 수준이나 2년은 8.2%에서 4.1%로 절반 가량 줄고, 5년은 1.2%에서 4.9%로 4배 정도 늘어남.

-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조례의 위탁기간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파악됨.

2) 위탁횟수 및 운영기간

- 어린이집 조사에서 현 위탁체나 위탁자의 위탁 횟수를 조사한 결과, 현 위탁체나 위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한 횟수는 평균 3회로 1~2회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함. 3회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적으로 위탁받고 있음.

〈표 14〉 위탁 횟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3	26.0	15.4	9.0	7.4	15.0	100.0(488)	3.0
지역								
대도시	20.8	22.0	15.7	10.2	8.5	22.9	100.0(236)	3.6 ^a
중소도시	32.9	29.5	17.4	7.4	4.7	8.1	100.0(149)	2.5 ^b
읍면	34.0	30.1	11.7	8.7	8.7	6.8	100.0(103)	2.5 ^b
$X^2(df)/F$			33.4(10) ^{***}					17.7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22.1	22.1	8.0	11.5	13.3	23.0	100.0(113)	3.7 ^{ab}
종교법인	15.9	19.0	15.9	12.7	12.7	23.8	100.0(63)	3.9 ^a
학교법인	19.0	42.9	14.3	9.5	4.8	9.5	100.0(21)	2.7 ^{abc}
단체	17.4	30.4	17.4	8.7	4.3	21.7	100.0(23)	3.4 ^{abc}
개인	32.2	27.8	19.0	7.8	4.4	8.8	100.0(205)	2.6 ^c
기타	25.0	25.0	12.5	12.5	12.5	12.5	100.0(8)	3.5 ^{abc}
시군구직영	40.0	27.3	16.4	3.6	1.8	10.9	100.0(55)	2.4 ^c
$X^2(df)/F$				-				7.0 ^{***}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3.6회로 가장 많음. 대도시는 6회 이상 비율이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2회가 가장 많아 대도시보다 위탁체나 위탁자가 교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탁형태별로 보면, 종교법인이 평균 3.9회로 가장 많이 위탁받고 있고 개인위탁은 2.6회임.
 -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은 6회 이상이 20%대로, 학교법인이나 단체, 개인 위탁은 1~2회가 많아서 위탁형태별로도 위탁횟수 차이를 나타냄.
- 위탁체나 위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총 기간은 평균 8.3년임.
- 보육조례 상의 위탁 계약기간 3년과 위탁횟수 평균 2.6회를 감안하면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함.

〈표 15〉 총 운영기간: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년						계(수)	평균
	1년 미만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이상		
전체	7.6	41.4	20.1	14.5	11.7	4.7	100.0(488)	8.3
지역								
대도시	5.9	30.9	20.3	16.9	18.6	7.2	100.0(236)	10.2 ^a
중소도시	8.1	53.7	18.8	11.4	4.7	3.4	100.0(149)	6.5 ^b
읍면	10.7	47.6	21.4	13.6	5.8	1.0	100.0(103)	6.5 ^b
$X^2(df)F$			42.8(10) ^{***}					20.3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7.1	30.1	12.4	16.8	27.4	6.2	100.0(113)	11.0 ^a
종교법인	-	28.6	22.2	25.4	15.9	7.9	100.0(63)	11.2 ^a
학교법인	9.5	38.1	33.3	9.5	9.5	-	100.0(21)	6.9 ^{bc}
단체	8.7	39.1	17.4	8.7	13.0	13.0	100.0(23)	9.7 ^{ab}
개인	9.8	49.8	21.5	11.7	4.4	2.9	100.0(205)	6.5 ^{bc}
기타	-	50.0	-	25.0	12.5	12.5	100.0(8)	9.5 ^{ab}
시군구직영	9.1	49.1	27.3	10.9	1.8	1.8	100.0(55)	5.8 ^c
$X^2(df)F$				-				10.3 ^{***}
2007년 조사 ¹⁾	39.8		35.7	11.8	2.9	2.9	100.0(560)	7.6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라. 위탁체 선정

1) 위탁 방법

□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 시 위탁방법을 조사한 결과, 최초 위탁 시 80.9%가 공개경쟁, 나머지는 임의위탁이나 기타 방법으로 운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됨.

-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임의위탁 비율은 4%p 정도 낮아졌고, 공개경쟁이 다소 증가하여 위탁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개선됨.
- 지역,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다수임.
 - 읍면지역은 타 지역보다 공개경쟁 비율이 낮고, 임의위탁이나 직영비율이 높음.
 -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90% 내외임. 종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임의위탁 비율이 다소 높음.

〈표 16〉 최초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계(수)
	공개경쟁	임의위탁	기타	비해당(시군구직영)	
전체	80.9	12.8	0.8	5.4	100.0(514)
지역					
대도시	80.8	14.3	0.8	4.1	100.0(245)
중소도시	87.6	8.5	0.7	3.3	100.0(153)
읍면	72.4	15.5	0.9	11.2	100.0(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88.0	7.7	-	4.3	100.0(117)
종교법인	70.3	26.6	1.6	1.6	100.0(64)
학교법인	90.0	10.0	-	-	100.0(20)
단체	69.6	26.1	4.3	-	100.0(23)
개인	88.8	10.2	0.5	0.5	100.0(205)
시군구직영	60.5	11.8	1.3	26.3	100.0(76)
기타	66.7	22.2	-	11.1	100.0(9)
2007년 조사 ¹⁾	76.2	16.4	7.4	-	100.0(579)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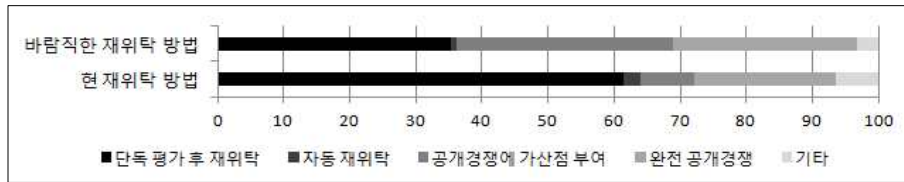
□ 시군구 대상으로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음.

- 현 재위탁 방법으로 단독 평가후 재위탁이 62.6%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 경쟁도 20%대임.
- 지역별로 보면, 도시일수록 단독 평가후 재위탁 비율이 높음. 반대로 완전 공개경쟁은 읍면지역이 많음.
- 현 재위탁 방법과 다르게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이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다수이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임.
- 각 시군구는 재위탁 심사 시 단독 평가 후 재위탁 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지만,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공개경쟁에 가산점 부여도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17>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현 재위탁 방법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단독 평가 후 재위 탁	자동 재위 탁	공개 경쟁 가산 점 부여	완전 공개 경쟁	기타	계(수)	단독 평가 후 재위 탁	자동 재위 탁	공개 경쟁 가산 점 부여	완전 공개 경쟁	기타	계(수)
전체	62.6	2.3	8.6	20.7	5.7	100.0(174)	34.5	0.6	36.8	25.3	2.9	100.0(174)
대도시	72.9	-	5.1	16.9	5.1	100.0(59)	37.3	-	35.6	20.3	6.8	100.0(59)
중소도시	63.6	3.6	9.1	20.0	3.6	100.0(55)	36.4	-	36.4	25.5	1.8	100.0(55)
읍면	51.7	3.3	11.7	25.0	8.3	100.0(60)	30.3	1.7	38.3	30.3	-	100.0(60)



[그림 1]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 <표 18>은 어린이집 조사에서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임.

- 재위탁 시 위탁방법으로는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 56%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 정도임.
-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단독 평가후 재위탁이 10% 증가한 반면, 자동 재위탁과 기타 방법은 10% 정도 줄어듦. 즉, 자동 재위탁일 경우 운영체가 운영권 확보로 어린이집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군구는 운영권은 확보해 주되, 평가를 통해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독 평가 후 재위탁 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 64.2%로 가장 많고, 완전공개 경쟁은 중소도시가 40%정도로 많음. 자동 재위탁은 읍면지역일수록 비율이 높음.

〈표 18〉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단독 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경쟁 가산점부여	완전 공개경쟁	기타	신규위탁	계(수)
전체	56.0	2.6	2.6	25.0	0.5	13.2	100.0(416)
지역							
대도시	64.2	1.9	2.4	19.8	0.5	11.3	100.0(212)
중소도시	42.9	2.5	2.5	38.7	0.8	12.6	100.0(119)
읍면	54.1	4.7	3.5	18.8	-	18.8	100.0(85)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57.7	1.9	3.8	24.0	-	12.5	100.0(104)
종교법인	61.8	5.5	1.8	25.5	-	5.5	100.0(55)
학교법인	52.6	5.3	-	26.3	-	15.8	100.0(19)
단체	66.7	4.8	-	23.8	-	4.8	100.0(21)
개인	56.2	1.2	2.5	26.5	1.2	12.3	100.0(162)
기타	71.4	-	-	14.3	-	14.3	100.0(7)
시군구직영	39.6	4.2	4.2	22.9	-	29.2	100.0(48)
2007년 조사 ¹⁾	46.3	11.3	5.8	21.2	10.5	4.9	100.0(533)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가)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5%,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함.
-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가 포함된 시군구가 93.7%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 교수가 각각 80%대임. 지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도 80% 정도임.
 -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읍면지역이 40% 정도로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음. 이에 반해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비율은 도시지역이 90%가 넘고, 읍면지역은 61.7%로 차이가 큼.

-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보육 관련 전문가 인력풀이 한정되어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임에 있어 도시지역과 차이가 있음.

〈표 19〉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구분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보육, 유아교 육학과 교수	국공립 어린 이집 원장	민간 어린 이집 원장	보육 교사	부모 대표	교육청 담당자	연합회 회장	단위 %(명)	
										기타	(수)
전체	19.5	79.9	82.2	54.0	64.9	86.8	93.7	22.4	47.7	47.7	(174)
대도시	10.2	78.0	93.2	59.3	67.8	86.4	96.6	13.6	44.1	50.8	(59)
중소도시	9.1	87.3	92.7	47.3	70.9	83.6	85.5	18.2	52.7	54.5	(55)
읍면	38.3	75.0	61.7	55.0	56.7	90.0	98.3	35.0	46.7	38.3	(60)

나)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선정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조사결과, 선정심사위원 비율을 보면, 보육유아교육학과 교수 20%, 부모 대표 19.3%, 지자체 담당공무원 16.7%, 보육교사 15.7%, 민간어린이집 원장 14.9%임.
-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과 비교해 보면, 현 구성 비율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의 보육전문가와 부모대표 비율은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보육교사 대표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함.

〈표 20〉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시군구 조사

구분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보육, 유아교육 학과 교수	국공립어 린이집 원장	민간어 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부모 대표	교육청 담당자	연합회 회장	단위: %	
										기타	
전체	11.4	16.7	20.0	10.5	14.9	15.7	19.3	12.0	12.8	25.4	
대도시	16.3	16.9	21.7 ^a	10.2	13.9	14.1 ^b	17.5 ^b	7.6	16.4 ^a	23.8	
중소도시	11.2	16.7	21.1 ^a	9.8	14.1	15.4 ^{ab}	17.5 ^b	11.1	11.3 ^b	26.5	
읍면	10.2	16.4	16.0 ^b	11.4	17.0	17.6 ^a	22.6 ^a	14.1	10.9 ^b	26.1	
F	1.6	0.1	5.1 ^{**}	1.2	2.4 [#]	3.6 [*]	6.5 ^{**}	1.9	6.5 ^{**}	0.2	

[#]p < 0.1, ^{*}p < .05,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다)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 조건

-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보육담당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군구 담당자 절반 이상이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장 고려함.

- 읍면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3.3%로 가장 많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차를 나타냄.

〈표 21〉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조건: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명)					기타	계(수)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보육 수요자 요구 반영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전체	54.0	33.3	10.9	1.1	0.6	100.0(174)	
대도시	57.6	30.5	10.2	1.7	-	100.0(59)	
중소도시	63.6	25.5	9.1	-	1.8	100.0(55)	
읍면	41.7	43.3	13.3	1.7	-	100.0(60)	

- 어린이집 조사에서 원장이 응답한 위탁 심의위원 자격 조건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7.1%로 많고, 다음이 공정성 39.8%, 정치적 중립성 8.6% 순임.

〈표 22〉 위탁 심의위원 자격 요건: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기타	계(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지역 특성이해	보육 수요자 요구 반영			
전체	8.6	39.8	47.1	3.1	1.2	0.2	100.0(488)	
지역						-		
대도시	10.6	35.6	50.4	3.0	0.4	-	100.0(236)	
중소도시	6.0	49.0	40.9	2.0	2.0	-	100.0(149)	
읍면	7.8	35.9	48.5	4.9	1.9	1.0	100.0(103)	

- 시군구 조사와 비교하면, 보육현장의 이해는 어린이집 원장이 10%p 이상, 공정성은 시군구가 15% 이상 높아 차이를 보임.
 - 운영권을 얻어야 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보육 현장을 잘 아는 심의위원이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고, 위탁체 선정을 주관하는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원 발생을 꺼리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지역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3)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가) 위탁체 선정 시 적용 기준

- 시군구가 신규·변경위탁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한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표로 85.6%임. 재위탁도 신규·변경위탁과 유사한 수치임.
 - 신규·변경위탁 시 대도시는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읍면지역은 지방 보육 조례 관련 기준이나 지자체 자체 기준표를 적용한다는 시군구가 많음.
 - 재위탁도 도시일수록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음.

〈표 23〉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신규·변경위탁					재위탁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	지자체 관련 조례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표	기 타	계(수)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	지자체 관련 조례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표	기 타	계(수)
전체	85.6	5.2	8.0	1.1	100.0(174)	82.2	5.2	11.5	1.1	100.0(174)
대도시	89.8	3.4	6.8	-	100.0(59)	84.7	3.4	11.9	-	100.0(59)
중소도시	85.5	3.6	7.3	3.6	100.0(55)	81.8	5.5	10.9	1.8	100.0(55)
읍면	81.7	8.3	10.0	-	100.0(60)	80.0	6.7	11.7	1.7	100.0(60)

나)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에 대한 의견

-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변경 위탁 심사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위탁 심사는 종전대로 위탁체 선정기준표 적용을 권장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7.5%, 보육정보센터장들도 68.9%로 절반 이상이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 적용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표 24 참조).
-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필요하다는 비율이 60%대로 비슷하지만 대도시는 50%로 평균보다 낮음(표 25 참조).

〈표 24〉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시군구 조사

구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단위: %(명)	
					X^2	(df)F
시군구						
전체	20.7	57.5	21.8	100.0(174)		
대도시	22.2	50.8	27.1	100.0(59)	8.6(4)*	
중소도시	20.0	70.9	9.1	100.0(55)		
읍면	20.0	51.7	28.3	100.0(60)		
보육정보센터						
전체	31.1	68.9	-	100.0(45)	-	

* $p < .05$

〈표 25〉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어린이집 조사

구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계(수)	단위: %(개소)	
					X^2	(df)
전체	25.8	57.4	16.8	100.0(488)		
지역						
대도시	28.4	50.8	20.8	100.0(236)	11.0(4)*	
중소도시	20.8	63.8	15.4	100.0(149)		
읍면	27.2	63.1	9.7	100.0(103)		

* $p < .05$

다) 추가 심사자료

- 신규변경 위탁 시 위탁 신청자에게 기본 심사자료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지와 자료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추가 자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시군구는 55.2%로 절반 이상임.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61.8%, 대도시 61%로 읍면지역 43.3%보다 많음.
 - 추가 요청자료는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자료가 40.8%, 평가인증 결과 증빙 자료 37.4%임.
 -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음.

〈표 26〉 신규·변경 위탁 추가 자료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추가자료 있음	심사자료			(수)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 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 자료	기타	
전체	55.2	40.8	37.4	2.9	(174)
대도시	61.0	47.5	39.0	3.4	(44)
중소도시	61.8	45.5	40.0	3.6	(35)
읍면지역	43.3	30.0	33.3	1.7	(43)

- 재위탁 시 자료를 요청하는 비율은 신규위탁 55.2%보다 다소 낮은 54%임.
- 도시일수록 추가 자료를 받는다는 비율이 높음. 대도시가 62.7%이고 읍면지역이 43.3%로 약 20% 정도 차이가 남.
 - 추가 심사자료는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가 39.1%,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가 37.4%로 가장 많음.

〈표 27〉 재위탁 시 추가자료 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추가 자료 있음	심사자료					(수)	
		재직교사 경력	재직교사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기타
전체	54.0	13.2	13.2	9.8	39.1	37.4	4.0	(122)
대도시	62.7	16.9	15.3	11.9	45.8	40.7	6.8	(44)
중소도시	56.4	7.3	9.1	7.3	43.6	38.2	3.6	(35)
읍면지역	43.3	15.0	15.0	10.0	28.3	33.3	1.7	(43)

라) 위탁 심사절차

-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를 조사한 결과, 신규위탁 시 서류심사가 있었다는 비율이 91.0%로 가장 많고, 발표 78.9%, 면접 72.9%임.
- 어린이집 현장관찰이 12%로 가장 낮음. 어린이집 현장관찰이 12.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재위탁의 경우, 신규위탁보다 발표가 10%p 이상 줄어든 반면 현장관찰이 20%p 이상 늘어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객관적인 현장관찰을 통한 재위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8〉 위탁 심사절차: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신규					재위탁					
	서류 심사	발표	현장 관찰	면접	(수)	서류 심사	발표	현장 관찰	면접	기타	(수)
전체	91.0	78.9	12.0	72.9	(133)	93.5	67.6	31.5	75.8	1.1	(355)
지역규모											
대도시	93.9	75.5	22.4	69.4	(49)	93.0	67.4	40.6	82.4	0.5	(187)
중소도시	91.8	83.7	4.1	73.5	(49)	93.0	79.0	25.0	77.0	2.0	(100)
읍면	85.7	77.1	8.6	77.1	(35)	95.6	51.5	16.2	55.9	1.5	(68)

-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 중 현장관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장관찰이 실시되었다는 비율은 약 1/3인 29%임.
- 현장관찰 시기는 1주일 전에 실시되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절반 정도였고, 다음으로 심사당일 26.6%, 한달 전 8.6%
 - 현장관찰 실시비율은 대도시가 41.7%로, 1주일 전과 심사당일 순이며, 중소도시는 한달 전에 실시했다는 비율이 18.5%로 많음.

〈표 29〉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 실시 여부 및 시기: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실시 여부		현장관찰 시기				계(수)
	실시	계(수)	1주일 전	심사당일	한달전	기타	
전체	29.0	100.0(487)	53.2	26.6	8.6	11.5	100.0(139)
지역규모							
대도시	41.7	100.0(235)	53.1	29.2	6.3	11.5	100.0(96)
중소도시	18.1	100.0(149)	51.9	18.5	18.5	11.1	100.0(27)
읍면	15.5	100.0(103)	56.3	25.0	6.3	12.5	100.0(16)

-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는 절반 이상인 64% 정도가 공개하였음.
-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 정도만 공개되었고, 모두 비공개라고 응답한 비율도 14.3% 정도임.

〈표 30〉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 여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위탁체 모집공고	위탁절차 및 방법	심의 결과	선정 결과	모두 비공개	(수)
전체	64.0	64.4	29.2	45.3	14.3	(517)
지역규모						
대도시	59.1	64.8	33.2	43.7	15.8	(247)
중소도시	74.0	70.1	24.0	49.4	12.3	(154)
읍면	61.2	56.0	27.6	43.1	13.8	(116)

마) 위탁체 기여

-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신규위탁 시 위탁체에게 위탁금을 제시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 신규위탁 시 위탁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비율이 81.6%로 과반수임.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 10.9%, 신규위탁 신청 시 위탁금액을 명시 7.5%로 소수임.
 - 지역별로 보면, 위탁금을 내지 않는 응답은 읍면이 가장 낮음. 특히, 위탁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나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타 지역보다 많음.

〈표 31〉 신규위탁 시 위탁금 제시 여부: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위탁금액 명시	위탁금 명시하지 않고 일정 금액 기능보강에 사용 권장	위탁금 내지 않음	계(수)
전체	7.5	10.9	81.6	100.0(174)
대도시	8.5	10.2	81.4	100.0(59)
중소도시	3.6	7.3	89.1	100.0(55)
읍면지역	10.0	15.0	75.0	100.0(60)

- 위탁 시 건물이나 부지, 위탁금 등을 기여한 경우, 부지 기여 269,000천원, 건물 기여 174,800천원임. 위탁금 및 기능보강 기여는 10,000~20,000천원임.
- 지역 차는 없으나 읍면지역은 건물과 위탁금 기여금이 많고, 부지는 중소도시가 많으며, 기능보강에 일정 금액 기여는 대도시가 많음.

〈표 32〉 위탁운영체 기여금: 어린이집 조사

단위: 천원

구분	건물	부지	위탁금	기능보강 일정액 기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174,800(196,079)	269,000(285,480)	13,094(15,798)	20,893(36,544)
대도시	104,600(137,120)	300,000(433,012)	12,750(16,165)	22,459(42,773)
중소도시	225,000(247,487)	466,666(230,940)	14,600(14,990)	17,307(29,665)
읍면지역	265,000(332,340)	97,500(68,495)	18,000(-)	21,250(8,539)
F	0.5	1.7	0.1	0.1
(수)	(8)	(10)	(69)	(36)

바) 위탁심사 개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심사 개선사항 1순위로 41.4%가 심의위원의 공정성, 28%는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23.0% 심의위원 선정을 지적함.
- 2순위로 심의위원 공정성과 심의위원 선정이 가장 많아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함.

〈표 33〉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의위원 공정성	심의 절차	심의 결과 공개	심의위원 선정	이의 제기 통로	없음	계(수)
	1순위	28.0	41.4	3.7	3.1	23.0	0.4	0.4
2순위	17.1	32.4	10.4	12.3	23.1	4.8	-	100.0(463)
1+2순위	45.1	73.8	14.1	15.4	46.1	5.2	0.4	

사)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이행보증보험료는 평균 251만원 정도로 30만원 이하가 43.7%로 가장 많고, 50~70만원과 100만원 이상이 10%대임.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율도 약 20% 정도임.
-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39인 이하와 40~49인은 30만원 미만이 50% 이상이며, 100인 이상은 100만원 이상 23.9% 정도임.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층면담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가 해당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증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역연합회에서 일괄 처리하여 개인 가입 시보다 저렴하게 보증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 위탁계약 시 보증보험료: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원

구분	3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43.7	14.8	9.8	12.8	18.9	100.0(439)	2,519,520.4
지역구분							
대도시	51.5	15.0	12.0	10.0	11.5	100.0(200)	3,221,648.7
중소도시	39.2	16.8	10.5	12.6	21.0	100.0(143)	890,107.7
읍면지역	34.4	11.5	4.2	18.8	31.3	100.0(96)	3,277,389.1
$X^2(df)/F$							2.5 [#]
정원							
39인 이하	58.4	11.7	6.5	6.5	16.9	100.0(77)	1,566,257.9 ^{ab}
40~49인	56.7	13.3	3.3	5.0	21.7	100.0(60)	2,148,466.7 ^{ab}
50~80인	43.2	14.9	10.8	11.5	19.6	100.0(148)	1,248,084.1 ^b
81~99인	37.3	18.1	10.8	16.9	16.9	100.0(83)	3,725,173.5 ^{ab}
100인 이상	25.4	15.5	15.5	23.9	19.7	100.0(71)	4,890,389.2 ^a
$X^2(df)/F$							2.0 [#]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아) 재위탁 탈락 및 유지

- 위탁체나 위탁자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현황과 원인을 조사한 결과,
 - 시군구 중 16.4%가 탈락한 위탁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일수록 위탁체가 탈락되는 시군구가 많음.

〈표 35〉 재위탁 탈락 및 유지: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재위탁 탈락			재위탁 유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6.1	83.9	100.0(174)	79.3	20.7	100.0(174)
대도시	25.4	74.6	100.0(59)	91.5	8.5	100.0(59)
중소도시	18.2	81.8	100.0(55)	83.6	16.4	100.0(55)
읍면지역	5.0	95.0	100.0(60)	63.3	36.7	100.0(60)

- 탈락 이유로는 공개경쟁으로 선정 점수가 차점이 되어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영자의 민원 제기, 행정처분 등의 공신력의 문제나 운영관리 소홀, 위탁심사 점수 저조 등이 있음. 이 외에도 타 시군 이중 신청, 정치적인 고려사항 등의 이유가 있음.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권을 부여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1.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순임.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많았음. 특히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이 20%를 차지함.
-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위탁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을 지적하였고, 개인위탁, 시군구 직영 순으로 많음..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을 꼽았고,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선호하여 지역차를 나타냄.
-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서문희 외, 2007).
 - 현재 개인위탁이 40% 이상을 차지하나 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폐지함. 개인위탁 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은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함.

심의위원 구성 비율 조정 및 자격조건을 마련함.

-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5%,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군구 조사에서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연합회 회장이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부모대표와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순

이였음.

- 개정 내용과 비교하면, 현 구성 비율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의 보육전문가와 부모대표 비율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보육교사 대표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함.
- 특히, 부모대표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육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서류나 면접 심사만으로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부모 비율을 줄여야 함.

□ 위탁 선정심의위원 자격조건을 마련함.

-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이 53.3%로 많고,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5.2% 순으로 많았음. 읍면지역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4.2%로 타 지역보다 많음.
-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 심의위원 자격 조건으로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47.1%로 많았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순임.
-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경험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선정조건으로 위탁체 심의위원 자격기준을 마련함.

□ 재위탁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제도화

- 위탁심사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으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신규변경위탁 84.4%, 재위탁 81.1%로 많았고, 지자체 관련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준표 순임.
 - 신규위탁 시에는 대도시의 위탁체 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은 보육조례 관련 기준이나 지자체 자체 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음.
 - 재위탁 시에도 도시지역이 위탁체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표 적용이 많음.
-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신규위탁 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77.4%, 재위탁 시 78.9%였으며, 읍면지역은 재위탁 시 지방자치단체관련 조례 적용 비율이 38.2%로 많음.
- 재위탁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0.7%였고,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

왔고,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보다 낮은 57.4%였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많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위탁운영이 늘어나고 있음. 위탁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함. 특히 재위탁 심사는 위탁운영 위탁체에게 운영권을 재 부여하는 것이므로 심사기준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위탁뿐 아니라 재위탁 심사에서도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함.

□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의무화

- 신규위탁 시 심사절차를 보면, 서류심사 91.0%, 발표 78.9%, 면접 72.9% 정도임. 어린이집 현장관찰은 12.0%로 가장 적고, 대도시가 22.4%로 타 지역보다 많음.
- 재위탁 시 심사절차는 발표가 신규위탁보다 10%p 이상 줄어든 반면 현장관찰은 20%p 이상 높음. 대도시 현장관찰 비율이 40.6%로 타 지역보다 2배 정도 많음.
-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이 실시되었다는 응답은 29%임. 현장관찰 실시 비율은 대도시가 41.7%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음.
- 현장관찰 시기는 1주일 전과 심사당일 순서임.
- 재위탁 심사관리기준표에서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배점이 가장 높음. 또한 시설운영 평가는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행 심사원칙을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위탁체 선정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의무화

-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공고는 64% 정도가 공개되었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가 공개되었음. 비공개는 14.3% 정도임.
- 위탁체 모집공고나 위탁절차 및 방법 공개는 중소도시가 70%로 많고, 심의결과는 대도시가 33.2%, 선정결과 공개는 지역에 상관없이 40% 정도로 많음. 모두 비공개는 10% 정도로 비슷한 수준임.

- 위탁체 선정에 있어 중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선정절차 및 결과가 공개되어야 함. 위탁체 공개모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위탁체 심의결과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이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위탁심사절차 및 심의결과 일체 공개를 의무화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1).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부록.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부록 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내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점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8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6점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점
· 참여 (중)	7점
· 미참여	3점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점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점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점

(부표 1 계속)

내용	배점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점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8점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점
5. 재정능력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점

주: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하며,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부록 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내용	배점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30점
① 시설운영 관리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여부,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점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8-7점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6-4점
②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점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8-7점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6-4점
③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	10-9점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보통인 경우	8-7점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미흡한 경우	6-4점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0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점
· 참여 (중)	7점
· 미참여	3점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점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점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5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4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3점

(부표 2 계속)

내용	배점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된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5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4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3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가 우수한 경우	10점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통으로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보통인 경우	8점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흡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경우	6점
5. 재정능력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점

주: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변경 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